부가가치세법

제 1 장 적용범위

제 1 조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1. 알제리 국내에서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영위하는 산업, 상업, 수공업의 성격을 띤 특별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판매, 건설, 서비스업
2. 이 세금은 다음과는 관계 없이 부과한다
   1) 과세대상 활동을 영위하는 자의 법적 지위 및 기타 세금 부과와 관련한 신분
   2) 활동의 형태 및 성격
3. 수입업

제 1 절 과세대상

A. 의무적 과세 대상

제 2 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1. 제 4 조에서 정의하는 생산자가 영위하는 판매 및 운송업
2. 건설업
3. 도매 수입상인에 의한 과세대상 수입제품 및 상품의 판매 및 운송업
4. 제 5 조에서 정의하는 도매상인에 의한 판매업
5. 본인에게 다음을 인도하는 경우
   1) 고정자산

2)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으로 본인의 필요 또는 본인의 활동의 필요에 의해 직접 제작한 것으로, 이 자산이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활동의 실현에 이용되지 않거나 제 9 조의 내용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경우

6. 임대업, 서비스업, 설계 및 조사작업 및 판매 및 건설업 이외의 모든 활동 (1996 년 개정금융법)

7.

1) 일상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재판매를 위해 부동산 또는 사업을 구매하는 자가 이를 매각하는 경우
2) 상기 언급한 구매나 매각활동의 중개업
3) 시행 중인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토지의 소유주가 토지를 분할 또는 매각하는 경우
4) 주거 또는 산업 및 상업활동에 이용될 목적으로, 시행 중인 법률이 정의하는 부동산업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건설하고 판매하는 경우

8. 기계류를 제외하고, 전체 또는 일부가 백금, 금, 은, 귀금속으로 구성되며 관세번호 71-01 및 71-02 에 해당하는 골동품과 관세번호 99-06 및 99-07 에 해당하는 미술작품, 고대미술품의 거래활동
9. 의료활동, 준 의료활동, 수의활동을 제외하고 개인 또는 회사가 자영업의 범위 내에서 영위하는 활동. 의료, 준 의료, 수의적 성격의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997 년 1 월 1 일을 기준으로 면제한다. 그러나 공공보건기관에 속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된다. (1996 년 개정금융법)
10. 시행 중인 법률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가 조직하는 공연 및 기타 오락활동
11. 우편 및 통신회사가 제공하는 전화 및 전신 서비스
12. 대형상점의 판매활동
13. 은행 및 보험회사의 활동

B. 선택적 과세대상

제 3 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다음과 거래하는 경우 신고절차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1. 수출업
2. 석유기업
3. 기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
4. 제 42 조에서 정하는 면세 구매의 혜택을 받는 기업

해당자는 의무적으로 실수익에 대한 과세 대상자이어야 한다. 정해진 신청기한은 없으며, 신청 사실을 매출액에 대한 세금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알려야 한다. 신청일 익월의 1 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체 활동 또는 부분적 활동에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의 양도 또는 중단의 경우를 제외하고,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 까지 적용한다. 효력 만기일의 3 개월 이전에 명시적 철회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암묵적으로 갱신된다.

제 2 절 과세대상의 정의

제 4 조

생산자라 함은,

1. 제조업자 또는 기업가로써 주요활동 또는 부가적 활동으로, 제품을 생산, 가공 또는 변형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가공 또는 변형 작업에 추가적 재료를 사용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적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소비자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해 상업적으로 공급하는 자
2.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제조업자의 공장 내에서 또는 밖에서, 제품의 포장, 발송, 보관 등 제품의 생산 및 상업화와 관련한 작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제품이 해당 작업자의 이름으로 판매되는가 여부는 관계 없음
3. 제 3 자에 의해 제 1 항과 2 항에서 정하는 활동을 실현하는 자

제 5 조

도매업자라 함은,

1. 재판매의 목적으로 다른 상인에게 판매하거나, 같은 조건 및 가격으로 기업, 공공단체 및 사립단체에게 판매하는 상인

제 6 조

다른 회사의 하나 또는 복수의 지점으로 영업하면서, 그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회사를 자회사라 한다. 다른 회사에 종속되었거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회사라 함은, 지배하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또는 매개자를 통하여 주요 지분을 보유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주요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타회사가 보유한 지배력을 통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주요 경영진을 임명하거나, 직접적으로 또는 매개자를 통해 보유한 지분을 통해 주주회의에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도 해당한다.

매개자라 함은 지배하는 회사의 경영자, 임원, 직원 및 경영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 자회사의 경영자 및 임원을 말한다.

제 3 부 과세지역

제 7 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알제리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알제리의 상품인도조건에 따라 실현된 판매활동
2. 알제리 국내에서 이루어진 서비스 제공, 권리의 양도, 물품의 임대, 조사의 수행

제 4 부 면제

A. 내수

제 8 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에 대한 판매업
   1) 삭제 (1997 년 개정금융법 제 47 조)
   2) 도살세 의 과세 대상이 되는 제품
   3) 도살세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가죽. 도살 후 최초 판매에 한하여 적용
2. 서비스업의 경우 총 매출액이 50,000 DA(디나르), 기타 업종의 경우 80,000 DA 미만인 경우. 이 항의 적용에 있어서 총 매출액은 전년에 실현한 매출액으로 매년 계산하며, 해당자가 1 년 중 부분적으로만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기간에 비례하여 매출액을 결정한다.
3. 동일 기업 내의 단위 또는 기관 간에 이루어진 활동

제 9 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빵과 제빵용 밀가루, 밀가루를 만드는 곡물 및 이 곡물을 찧어서 만든 가루; 이 항에서 언급한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빵은 제빵용 밀가루, 소금, 효모만을 넣은 반죽으로 만든 빵을 말하며, 제빵용 밀가루는 밀, 호밀 또는 밀과 호밀의 혼합으로 제빵을 위해 정해진 비율로 추출한 것을 말한다.
2. 다음에서 정하는 농산물 및 그 파생상품에 대한 판매업
   1) 설탕이나 기타 단맛을 내는 첨가제를 넣지 않은 우유, 비농축 유크림, 분유
   2) 설탕이나 기타 단맛을 내는 첨가제를 넣지 않은 우유, 농축 유크림, 분유
   3) 보리 (관세번호 10-03)
   4) 귀리 (관세번호 10-04)
   5) 쌀 (관세번호 10-06) 표백처리나 윤기를 낸 쌀 (관세 번호 1006-30 00) 및 쌀가루 (관세번호 10 06 10 00)제외
3. 다음에서 정하는 가축의 사육으로 인한 생산물에 대한 판매업
   1) 살아있는 말, 양, 노새 (관세번호 01-01)
   2) 소류의 살아있는 동물 (관세번호 01-02)

3) 양류 또는 염소류의 살아있는 동물 (관세번호 01-04)
4) 낙타과의 동물 (관세번호 01. 06-00 10)

4. 학생들에게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비영리로 교구가 진행하는 사업
5. 국가해방전쟁의 전사자를 기념하거나 국가해방군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단체 또는 정식으로 구성된 단체에 의한 건조물 제작 활동
6. 국방부 장관 또는 그를 대표하여 국내에서 취득하거나 수입한 제품, 장비, 용품, 기재. 적용방법 및 상기 언급한 국방부 조직 목록은 재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공동명령으로 정한다. (1992 년 개정금융법)
7. 국방부 장관이나 그를 대표하는 자가 수행한 국방 관련 기반시설 건설 및 공사
8. 조선소에서 수행하는 해양구조물, 상선, 어선, 전투함, 바지선, 구조선, 인도선, 준설선, 해양어선 및 해양구조물에 부속된 소형선박의 수리, 건조, 및 개조 작업 또는 이 작업을 위한 자재 및 제품의 조달활동
9. 알제리 국영 항공사를 위한 항공기의 수리, 제작 또는 항공기의 관련 부품 조달 활동
10. 신제품 또는 사용기간 3 년 미만인 10 마력 미만의 자동차, 신제품 또는 사용기간 3 년 미만의 총 중량 3,500 kg 미만의 기타 실용차량으로 장애율 60% 이상의 상이 국가해방군이 5 년에 한번씩 구입하는 차량 (1998 년 개정금융법 제 31 조) 장애율 60% 미만의 기타 상이군인은 장애율에 따라 세금을 감면한다. 이 항에 언급한 차량은 수혜자의 신분에 따른 세금혜택을 상환한 후 다음 조건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1) 취득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세금혜택의 전체를 상환한다.
    2) 취득일로부터 3 년에서 5 년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 세금혜택의 절반을 상환한다.
    3) 취득일로부터 5 년이 지난 후 세금혜택의 상환은 없다.

상기 언급한 양도제한 기간 내에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차량은 세금의 납부없이 상속되거나 상속 후 양도 될 수 있다. 이 항에서 언급한 5 년의 조건은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전문기술자에 의해 차량의 전체적 개조가 이루어진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전사자의 자녀 또는 시행 중인 규칙에 따른 이동력이 제한된 장애인이 취득한 신제품 또는 사용기간 3 년 미만의 10 마력 미만 자동차 (1994 개정금융법) 이 항에서 정하는 차량의 양도 시 이 조 제 10 항의 내용을 따른다. (1993 개정금융법)
12. 하반신 불구 또는 하반신 절단수술을 받은 자, F 면허증을 보유한 장애인이 매 7 년마다 특수 개조한 사용기간 3 년 미만의 10 마력 미만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13. 엔진 및 기타 추진기관을 장착한 제품을 포함한 휠체어 및 유사 제품 (관세번호 87-13), 장애인을 위해 특수 제작한 보조엔진을 장착한 오토바이 및 자전거 (관세번호 87, 12-00, 90)
14. 정형외과 관련 보조기, 보청기, 장애 또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손에 들거나, 신체에 부착하거나 기관 내에 삽입한 기구 (관세번호 90-21) 및 특수 공공단체 및 시행 중인 규칙에 따라 정식으로 인정받은 민간 장애인 단체가 제공하는 재활 및 교육 자료
15. 국영석유기업 SONATRACH 또는 하기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관련 회사가 취득한 액체 및 기체 탄화수소의 채굴 및 운하를 통한 운송을 위한 탐사, 조사작업 및 관련 기자재, 원료, 제품 및 서비스, 해당 제품 및 서비스 목록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정한다.
16. 모순되는 모든 법규에도 불구하고, 알제리 중앙은행이 실현하는 활동 및 통화의 발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활동. 이 항에 언급한 활동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법규를 통해 정한다. (1994 년 개정금융법)
17. 알제리 적십자 및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기타 인도적 성격의 단체에게 기부되어, 이재민, 빈민 또는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품 및 모든 종류의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 이 항의 적용 방법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정한다. (1993 년 개정금융법)
18.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그 목록을 정하는 의약품의 판매업
19. 수의약품의 판매업. 해당 약품의 목록은 재무부, 농업부 및 보건부 장관의 공동 명령으로 정한다.
20. 양식업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활동
21. 스포츠, 문화 및 예술 공연 및 국가적 또는 국제적 상호부조운동과 관련하여 조직된 모든 공연. 이 항의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른다.

22. 호혜주의을 전제로, 외교특사나 알제리에 임명된 대사 및 대사관, 영사관 직원이 수행하는 건설, 통신, 수자원, 가스, 전기 관련 서비스, 건물의 임대. 호혜주의를 전제로 외교특사, 대사, 대사관/영사관 직원이 알제리 국내에서 취득한 제품. 이 항에서 언급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및 해당제품의 가격 하한선은 재무부와 외교부 장관의 공동 명령에 따라 정한다. (1998 년 개정금융법 제 32 조)
23. 연극 및 발레 공연
24. 지질학 및 광물학관련 조사
25.
    1) 호혜주의를 전제로, 국제 연안항해 중인 자국 및 외국 전투함에 대한 식량 공급 및 항공사가 국제운항 중인 항공기에게 공급하는 목적의 제품 인도
    2) 상기 언급한 선박 및 항공기와 그의 선하의 직접적 필요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A. 선박 및 그 선하의 직접적 필요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인양, 조종, 계류, 식수공급, 쓰레기 수거, 갑판 청소, 선박의 중개 및 위탁, 운항 중 전화, 해양 전문가 및 점검, 항구 이용료, 선박의 유지, 선박 간 물품 이동, 해양 정거장의 사용, 적재 및 하역, 컨테이너 임대, 펌프작업, 해손/선박 보험
        B. 항공기 및 항공기의 국제운항의 직접적 필요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착륙 및 이륙, 도착과 관련한 기술지원, 항공기의 정지 및 출발, 수리, 항공기 및 항공기 내 기자재의 청소와 유지, 승객 및 상품의 탑승을 위한 공항시설 이용, 항공기에의 식량공급을 위한 시설 이용, 항공기의 정지, 계류, 피난, 승객의 탑승 및 하선, 화물의 적재 및 하역
26. 보험과 관련한 법률이 정의하는 개인의 보험계약 (1996 년 개정금융법)
27. 개인의 거주지 취득 또는 건설을 위한 은행의 가계대출 (1998 년 개정금융법 제 33 조)

B. 수입

제 10 조

국내 판매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 11 조

다음의 각 항의 수입품의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관세 보류 상품: 창고보관품, 일시적 허가, 면세 통과, 선박 간 이동, 관세법 제 178 조에서 정하는 특수원칙에 따른 기탁물
2. 관세법 제 197 조, 제 202 조, 제 213 조에 따라 관세 면제 특수 허가를 받은 상품
3. 관세 번호 89-01 A 와 C, 89-02, 89-04, 89-05, 89-06, 89-07, 89-08 의 해양선박과 알제리 국영 항공사가 발주한 항공기
4. 이 조 제 3 항에서 언급한 선박 및 항공기의 건조, 의장, 무장,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부품 및 미가공 제품. 항공기, 엔진, 기자재, 원자재, 연료, 윤활유와 공식 인증된 비행학교 및 훈련소
5. 외국에서 진행하는 알제리 선박 및 항공기의 수선, 수리, 개조
6. 광물 상태의 금 (관세번호 Ex 26-01 G), 덩어리 형태의 금, 주괴, 금괴, 금가루, 금속 파손 물품 (관세번호 Ex 71-07, Ex 71-11) 및 금화 (관세번호 Ex 72-01)
7. 시행 중인 법률이나 규칙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물물교환의 형태로 수입된 상품

제 12 조

제 9 조 및 제 11 조의 면세 혜택은 관세의 적용에 있어서 유사제품을 제외한 구체적으로 언급된 제품에만 부여한다.

C. 수출

제 13 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수출상품과 관련한 판매업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 판매자 또는 가공자가 회계장부 또는 회계장부가 없는 경우 이 법규의 제 72 조에서 정하는 장부에, 날짜 순으로 기입 날짜, 수량, 상표 및 화물번호, 종류, 가치, 도착지를 기입해야 한다.
2) 회계장부 기입일, 상표 및 화물번호가 발송서류(운송증서, 명세서 등)으로 확인되거나, 수출용 상품을 제시하는 자가 관세 신고에서 발송자의 이름을 기입해야 한다.
3) 수출이 법률이나 규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물품의 발송 시 판매자 또는 가공자의 사업장에서 관세청 직원 또는 세무서 직원이 확인작업을 수행하며, 회계장부 및 이 항에서 언급한 서류, 운송 영수증, 화물 운송장, 선하증권 및 기타 장부상 기록의 증빙이 되는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우체국에 의해 발송된 상품의 경우, 우체국의 직원은 우편물을 접수할 때 지역 관세청 또는 세무서에 내용물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우체국의 영수증은 모든 경우에 판매자나 가공자가 기입하는 운송 장부에 첨부해야 한다.

2.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을 법적으로 관세가 성립하는 상점으로 인도하는 판매업
3. 골동품 상인에 의한 판매나 골동품, 옛 서적, 가구, 수집품의 판매, 자연사 수집품 및 생존 중이거나 20 년 이내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을 제외한 미술품, 수채화, 엽서, 그림, 조각, 판각, 판화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내수 상품과 같은 세율 및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공된 보석이나 원석, 진주, 귀금속, 보석세공품, 금은세공품 및 기타 귀금속 가공품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2 장 과세기초 및 세율

제 1 절 과세요인

제 14 조

다음 시점에 부가가치세의 과세요인이 성립한다.

1. 판매업의 경우 법적 또는 물질적 인도. 유통업자에 의한 식수 판매의 경우 과세요인은 가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지급되었을 때 성립한다.
2. 건설업의 경우 대금의 일부 또는 전체의 지급. 부동산업자에 의한 건설의 경우 수익자에게 법적 또는 물질적으로 상품을 인도하였을 때 과세요인이 성립한다. (1998 개정금융법 제 34 조)
3. 외국기업의 경우, 공사의 완료 이후에 청구하는 세금이 있을 때, 세금의 최종 수납 시 과세요인이 성립한다.
4. 회사의 내부 거래 생산품 및 건설계약이 경우 인도 시점
5. 수입품의 경우, 상품의 관세구역 진입 시점. 부가가치세는 관세 신고자에게 부과한다.
6. 제 13 조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수입품은 관세구역 진입 시점. 부가가치세는 관세 신고자에게 부과한다.
7.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의 경우 가격의 일부 또는 전체의 지급. 공연 및 기타 오락상품의 경우 입장권의 인도에 따라 가격의 지불 없이 과세요인이 성립할 수 있다. 차변표 수령에 따라 상품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요인은 차변표의 수령으로 발생한다.

제 2 절 과세기초

A. 내수

제 15 조

과세대상 매출액은 상품, 노동 및 서비스의 가격과 모든 비용, 권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4) 판매업의 경우 총판매액
5) 상품이나 물품의 물물교환의 경우, 인수한 상품의 대가로 인도한 상품의 가치와 금전적 보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상품에 대한 소비세는 부가가치세가 성립하는 활동의 시점에 납부되지 않았더라도 이 조의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언급한 판매 및 물물교환 금액에 포함한다.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회사 또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를 보유한 회사가 영위하는 판매활동의 경우, 각각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아닌, 판매를 영위한 자회사나 모회사에 대해 판매가격에 세금이 성립한다. 여기서 자회사란 제 6 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인이 직접적으로 또는 매개자를 통해 지분의 일부를 소유하거나, 의사결정권을 갖는 회사의 판매활동에 대한 세금은, 해당 회사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는 상인이 아닌, 판매를 적용하는 회사에 대해, 판매가격에 세금이 성립한다.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거나, 의사결정권을 갖는 상인이 영위하는 판매활동에 대한 세금은, 해당 상인이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아닌, 지분을 보유하거나 의사결정권을 갖는 상인에 대해 판매가격에 세금이 성립한다.

고객에게 다음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

6) 할인, 감면, 초과지불액의 반환, 어음의 할인
7) 인지세
8) 위탁작업에 대한 대가로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포장 위탁금
9) 세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상품의 인도를 위해 납세자가 직접 지불한 운송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청구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1992 년 개정 금융법)

관세번호 71-13 에서 정하는 보석이 박힌 귀금속 세공품에 대한 과세에서, 보증 각인 날인 시 납부한 종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공제한다.

8. 다음에 대한 회사 내부 거래에서는
   10) 동산의 경우, 유사제품에 대한 도매가격 또는 정보가 없는 경우 생산된 제품의 원가에서 정상 마진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1) 부동산의 경우 공사의 원가
9. 외국기업과 체결한 부동산 건설 계약의 경우
   12) 국내 통화로 지급된 금액
   13) 외국 통화로 지급된 금액은 계약 또는 변경증서의 체결일 환율을 기준으로 디나르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3 년 개정금융법)

그러나,

   14) 운송업자 및 면세통과 수송인의 매출액은 총 지급받은 금액에서 운송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을 제외한 총 수입으로 한다. 공제하는 비용은 운송 또는 통관에 필수적인 정당한 지출로 납세자의 운송, 화물의 적재 및 하역, 관리업무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이 내용은 통관절차를 직접 또는 동업자에 의해 수행하는 면세통과 수송인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5) 이권영업자 및 공동권리의 낙찰자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본인 명의로 권리를 이양 받은 경우 총 수입에서 시에 납부한 입찰액을 제외한 금액
      B. 시의 명의로 권리를 이양 받은 경우 고정액 또는 비례로 계산하는 수입
   16) 분양업자, 부동산 및 사업의 매매인의 경우 매출액은 판매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비용,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0. 석유제품의 판매활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7) 생산단계에서는 공장도 판매가격
   18) 유통단계에서는, 도매업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도매 마진 (1996 년 개정 금융법 제 73 조)

제 16 조

이 법규의 제 15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활동의 과세기초는, 과세 대상이 되는 활동의 실현에 따라 발생한 총 수입으로 한다.

제 17 조

상기 조항에 복수로 해당하는 활동을 동시해 영위하는 자의 매출액은 각 활동 별 관련 조항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제 18 조

판매, 노동 및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후 취소되거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세금은 사후 영위하는 활동에 대해 이월되거나 납부한 자가 더 이상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반환된다. 납부세액을 이월하기 위해서는 취소일 직후 월간 명세서에 다음을 명시하는 특별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1. 최초 활동의 종류 및 거래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2. 활동을 영위한 날짜
3. 회계문서 또는 제 72 조에서 정하는 특수장부 상 기입된 페이지 번호
4. 반환된 금액이나 미지급 금액

상기에 언급한 정정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최초로 발행하는 명세서의 금액으로 이월한다. 이월의 방법으로 반환할 수 없는 세액은 상기 언급한 모든 증빙자료를 첨부한 특별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반환한다. 징수 이후 4 년이 지난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세액의 이월이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B. 수입

제 19 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포함한 과세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C. 수출

제 20 조

과세대상 제품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포함한 수출 시점에서의 상품의 격으로 한다.

제 3 절 세율

A. 정상 세율

제 21 조

1. 부가가치세의 정상 세율은 21%로 한다.
2. 다음 항에서 정하는 활동에 대해 정상 세율로 과세한다.
   1) 시행 중인 규칙에 따라 A 등급에 속하는 가격을 받는 미용실의 활동
   2)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활동이나, 가구를 갖춘 주택의 임대 및 이 활동들에 부가적인 활동
   3) 자동차 및 기타 육상 운송수단, 관련 부품 및 부속품으로 관세번호 87-02, 87-04, 87-06 및 87-09 에 속하는 제품
   4) 관세번호 87-11 에 속하는 오토바이 및 자전거. 삼륜자전거의 14%의 감면세율을 적용한다.
   5) 직접세법 제 2 조에서 정하는 주류세의 대상이 되는 주류, 와인 및 기타 유사 음료
   6) 간접세법 제 2 조에서 정하는 보증세의 대상이 되는 금과 백금 세공품 (1997 개정금융법 제 49 조)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세금의 공제 없이 21%의 정상 세율을 적용한다.
   1) 콘서트, 서커스 및 기타 모든 종류의 공연 및 오락활동
   2) 영화제작 (1992 개정금융법)

3) 고급휘발유 (관세번호 Ex.2710), 보통휘발유 (관세번호 Ex.2710), 연료용 액화석유가스 (관세번호 Ex.2711). 용기에 포장되지 않은 액화석유가스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96 개정금융법)

B. 특별감면세율

제 22 조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별감면세율은 7%로 한다. 이는 다음에 열거한 제품, 식료품, 상품에 적용한다.

I. 부가가치세 감면이 가능한 과세대상 활동

1. 하기 목록에 포함되는 상품, 식료품, 물품의 판매활동 (1997 년 개정금융법 제 50 조)
2. 인쇄업자가 영위하는 인쇄활동 및 신문, 출판물, 정기 발행물, 인쇄폐기물의 판매활동
3. 개인의 직접적 필요에 의한 주택의 건설이나 정식으로 인정받은 부동산 조합이 조합원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비영리로 진행하는 주택 건설
4. 이 법규의 제 2 조 7 항에서 정하는 부동산업의 범위 내에서 실현하는 부동산의 건축과 판매 및 공공주택의 건설활동
5. 생선장수의 판매활동
6. 재무부 및 농업부 장관의 공동 명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기재
7. 이 법규의 내용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어류 및 식용 해산물을 제외한 식물 및 가축 (수산양식업의 생산물)
8. 다음에 지정한 전통 수공업에 의한 생산물
   1) 수작업으로 제작된 제품
      A. 전통 양탄자
      B. 광주리
      C. 에스파르토 제품
      D. 구운 토기 또는 사암으로 만든 도기
      E. 유기 제품
      F. 전통 장신구

G. 전통 의류
H. 전통 자수세공품
I. 유리불기로 제작한 제품
J. 전통 악기
K. 뿔로 만든 공예품
L. 박제
M. 전통 염료
N. 빻은 쿠스쿠스 및 기타 식용 반죽
O. 전통 제과 및 과자

2) 전통적인 방법으로 추출된 제품
A. 전통적인 방법으로 추출한 올리브 기름
B. 밀가루, 밀기울 및 기타 전통적 제분업 생산품

이 항 내용의 적용 방법 및 상기 언급한 전통 수공예품의 목록은 재무부 및 수공업담당 장관의 공동 명령에 따라 정한다.

9. 신문지 (관세번호 48-01)
10. 관세표 제 30 절에서 정하는 수의용 의약품. 제품의 목록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법률을 통해 정한다.
11. 은 세공품
12. 주택경영진흥기관(OPGI)이 징수하는 공공주택의 임대료
13. 의료활동

II. 부가가치세 감면이 불가능한 과세대상 활동

다음에 열거한 자가 영위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감면 없이, 특수 감면 세율 7%로 과세한다.

1.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는 외국기업
2. 상인
3. 시장 상권의 낙찰자
4. 위탁판매업자 및 중개인

5. 택시 운전사 (1994 년 개정금융법)
6. 중연료유 (관세번호 Ex.2710) (1996 년 개정금융법 제 77 조)

C. 감면 세율

제 23 조

부가가치세의 감면 세율은 14%로 정한다. (1997 년 개정금융법 제 15 조)

다음에 열거한 제품, 활동 및 서비스에 감면 세율을 적용한다.

I. 부가가치세 감면이 가능한 과세대상 활동

1. 하기 목록에 포함되는 상품, 식료품 및 물품의 판매활동
2. 건설활동
3. 승객 및 상품의 운송활동 (1997 년 개정금융법 제 51 조)
4. 꿀의 판매활동 (양봉업) (1997 년 개정금융법 제 51 조)
5. 농업 또는 메뚜기의 사살을 위한 공중에서의 분무 또는 살포활동
6. 교육기관에서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교육자료의 원재료 (종이, 잉크, 물감)과 관련한 활동
7. 자선단체에 의한 활동 또는 상품의 판매와는 무관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활동
8. 이 법규의 제 2 조 7 항 C 에서 언급한 분양 및 토지의 분할판매 활동
9. 전화 및 전신의 운영
10. 천연가스 (관세번호 27-11, 21-00)와 관련하여 EPIC/SONELGAZ 가 영위하는 활동
11. 은행 및 보험회사의 활동

II. 부가가치세의 감면 없이 감면 세율로 과세하는 활동

다음에 지정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감면 업이 14%의 감면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1. 스포츠 경기, 복싱경기, 자동차 경주, 경마, 비둘기 사격
2. 동물원 및 여가용 공원에서 진행하는 공연 및 모든 종류의 오락활동
3. 경유 (관세번호 Ex 2710), 프로판 (관세번호 Ex 2711), 부탄 (관세번호 Ex 2711) 및 역청, 석유의 정제로 인한 생산품으로 부가가치세의 정상 세율이나 특수 감면 세율을 적용 받지 않고 관세표 제 27 절에 속하는 제품 (1996 년 개정금융법 제 80 조)

D. 인상 세율

제 24 조

삭제 (1995 년 개정금융법 제 48 조)

제 4 절 내부소비세

제 25 조

하기 열거한 제품에 대해 내부소비세를 부과한다. (1997 년 개정금융법 제 52 조)

제 26 조

과세기초, 징수액의 차감 및 분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에 적용하는 규칙을 내부소비세에도 적용한다.

제 27 조

내부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제 28 조

매월 20 일 이전에 내부소비세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의 명세서와 동일한 시점에, 소비자에게 인도된 과세대상 제품의 수량에 대한 월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제 25 조에서 정하는 차감액을 제외한 내부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1995 년 개정금융법 제 62 조)

제 5 절 석유제품세

제 28-1 조

알제리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석유제품 및 유사제품에 대해 국가 예산에 포함하는 석유제품세를 부과한다. 석유제품세는 다음에 열거하는 제품에 대해 하기 세율에 따라 부과한다. (1997 년 개정금융법 제 53 조)

제 28-2 조

과세기초, 징수액의 차감 및 분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에 적용하는 규칙을 석유제품세에도 적용한다. (1996 년 개정금융법)

제 28-3 조

이 법규의 제 15 조 및 제 19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세는 해당제품에 대한 모든 세금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28-4 조

매월 20 일 이전에 석유제품세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명세서의 제출과 동일한 시점에, 소비자에게 인도한 과세대상 제품의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월간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신고와 동시에 제 28-1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차감액과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 28-5 조

석유제품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대상 제품의 생산자 및 재판매자는, 재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조건에 따른 세율을 시행한 후 10 일 이내에, 이미 세금을 납부한 재고량을 신고하고 이전 세액과 새로운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 28-6 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석유제품세는 동일한 조건 하에 관세와 동일한 규정에 따라 관세청에서 징수한다. 수출품에 대해서는 석유제품세를 면제한다. (1996 년 개정금융법)

제 28-7 조

기타 법률 및 규칙에 대한 침해 없이, 액체연료의 기화형태로의 사용,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용목적의 기화를 위한 판매 시, 이 제품은 그가 대체하는 연료에 적용하는 세금의 과세대상이 된다.

제 3 장 공제

제 29 조

과세대상 활동에 대해 부과한 송장, 계산서, 수입문서에 기입된 부가가치세는, 이 활동에 적용하는 세금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

제 29-1 조

삭제 (1995 년 개정금융법 제 50 조)

제 30 조

부가가치세의 납세자가 송장, 계산서, 수입문서의 발행 익월에 매출액에 대한 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일 또는 생성일 익월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 31 조

본사 단위로 매출액을 합산하는 납세자는, 본사에 속한 사업단위, 기구가 영위한 또는 그에게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 32 조

물질, 제품, 서비스가 실제로 과세 대상이 되는 활동에 사용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제 33 조

특정 월에 대해 부과한 세금이 공제세액 미만일 경우, 잔여세액은 익월의 세금으로 이월한다.

제 34 조

수출 또는 면세가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취득 또는 수입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언급한 공제를 통해 일부라 할지라도 세금의 반환은 불가하다.

제 35 조

1. 두 기업이 조달 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하고, 발주자가 본인 명의로 계약서상 조달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현지에서 수입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공사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공제가 가능하다.
2. 기업의 합병이나 법적 형태의 변형이 있을 경우, 이미 납부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그 잔액은 공제 대상이 되어 신규 기업에 이전된다.
3. 이월된 세금의 감면이나 공제가 상기 언급한 기간으로부터 유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회계장부 및 관련 회계문서의 제출을 통해 그 금액을 증명해야 한다.

제 36 조

이 법규의 제 2 조 및 제 3 조에서 정의하는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업은, 과세대상이 되는 날짜로부터 원자재의 재고, 포장, 제품 및 해당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감가상각 가능한 신규 자산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공급업자가 발행한 송장을 증빙으로 제시해야 하며, 송장에서 명시적으로 공급업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수입품에 대해서는, 송장 이외에 관세신고서 사본 또는 면세통과 송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공제는 과세대상 활동의 실현에 따라 발생하는 세액에 전가하여 적용한다.

제 37 조

다음의 경우 세금공제를 취소한다.

1. 상품의 소실
2. 해당 활동이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3. 해당활동에 대해 최종적으로 대금이 미불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그러나 판매 손실이 있거나, 상품이나 서비스가 수출 또는 석유기업에 인도되었거나, 제 42 조에서 정하는 면세 구매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경우 공제의 취소는 없다

제 38 조

제 29 조의 내용을 전제로, 감가상각 가능한 자산에 대해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일괄납부제도를 따르는 납세자를 제외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공제 가능하다.

1. 신제품 또는 개량된 제품을 보증과 함께 취득하고,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수출 또는 면세제도의 혜택을 받는 분야에 인도하는 목적의 활동에 이용하여야 한다.
2. 할인 및 공제가격을 포함한 취득가격 또는 원가로 회계장부에 자산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자산의 취득일 또는 생성일로부터 5 년 간 회사의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을 정해진 기간만큼 보유하지 않거나, 이 기간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기업은 25 개월 이내에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정당하게 입증되는 불가항력을 통해 자산이 영구적으로 이용가치를 잃는 경우 세금에 대한 조정은 없다.

제 39 조

매출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의 경우, 공제 가능한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백분율에 따라 결정한다.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거나,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인도한 매출액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것을 분자로 하고,
2. 분자로 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거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매출액을 더한 것을 분모로 한다.

백분율로의 변환에서 1%단위로 반올림한다. 위 정의에 따른 공제비율의 결정은 기업의 모든 사업영역의 활동에 대해 실현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세무관청은 복수의 사업영역에서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 각 영역 별 별로도 공제비율을 결정하도록 예외적으로 승인하거나 강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 내용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영역을 독립적인 회사로 간주한다. 각 영역별 공제비율을 결정하는 회사는 관할 세무서에 15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의무가 있는 기업은 동일한 조건하에, 면세 대상이 되는 사업영역의 창출로 인한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제 40 조

매년 말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해당 연도에 실현한 활동에 대한 공제 비율을 결정해야 하며, 매년 3 월 25 일 이전에 관할 세무서에 해당연도에 적용하는 공제비율 및 결정에 사용된 모든 요소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공제비율이 최초 비율과 5/10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익년 3 월 25 일 이전에 실제 비율에 따른 조정을 진행해야 하여 이미 공제된 세금의 초과액을 납부하거나 추가적 공제를 실시해야 한다. 익년에 취득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제의 계산에 적용하는 비율은 연말에 계산한 비율과의 차이가 0.5% 미만일 경우 최종적인 것으로 확정한다.

신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창립 익년까지 적용 가능한 임시 공제비율을 예상 매출에 따라 결정한다. 창립 또는 납세대상의 자격을 얻은 익월에 지출하는 매출액 명세서에 이 임시 공제비율을 신고해야 한다. 임시 비율 적용의 만료 시, 실제 계산한 비율과의 변동폭이 5/100 미만인 경우 임시 비율을 최종적인 것으로 한다. 변동폭이 5/100 이상인 경우, 익년 3 월 25 일 이전에 실제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해야 한다.

제 41 조

다음에 대해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할 수 없다.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활동에 이용되지 않은 상품, 서비스, 자재, 부동산 및 사업장
2.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업의 주요 사업에 이용되지 않은 자동차
3. 일괄납부제도를 적용하는 납세자가 인도한 상품 및 서비스
4. 일괄납부제도를 적용하는 납세자가 취득하거나 생성한 부동산

5. 기부 또는 증여로 제공한 상품 및 서비스
6.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상품의 수리에 이용된 서비스, 부품 및 조달품

제 4 장 면세 및 반환

제 1 절 면세구매

제 42 조

이 법률의 제 43 조에서 제 49 조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시행 중인 법률에 의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회사의 공급업자가 취득하여 액체 및 기체의 탄화수소의 탐사, 조사, 생산, 및 운송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2. 수출업자가 수출 또는 재수출 또는 수출품의 제작, 조립, 검사, 포장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수입하는 상품
3. 이 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제품의 생산, 검사, 상업화에 이용하는 원자재, 부품, 특수 포장의 구매
4. 자동차를 제외하고, « 청년 취업을 위한 국가기금 »의 대상이 되는 청년실업가가 신규 설립한 회사 또는 사업단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기자재. 알제리 국내에서 생산되니 않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내용의 구체적 적용 방법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법규에 의해 정한다. (1997 개정금융법 제 54 조)

제 43 조

제 42 조의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관할 지역 세무서의 결정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4 조

부가가치세 면세 구매 또는 수입은 연간 조세부과에서 승인하며, 그 금액은 혜택을 승인 받은 자가 전년도 동일한 목적지에 인도한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제세 판매가격 또는 전년도 제세 현찰 구매가격에서 15%를 인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5 조

부가가치세 면세 구매는 매년 각 도 세무서 관할부서의 세무조사관의 실사 이후 승인한다. 각 도 세무서 관할부서의 세무조사관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증빙 자료를 제시하고 조세부과를 인상할 수 있다.

매년 초 연간 승인의 갱신 이전에, 각 도 세무서 관할부서 세무조사관에 의해 전년 액수의 1/4 에 해당하는 임시 조세부과를 승인할 수 있다.

신규 설립한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분기별 지불기한에 대한 임시 조세부과를 승인할 수 있다. 이 조세부과는 연말 이전에 부가가치세 면제 구매의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 사후 조정할 수 있다.

제 46 조

다음을 만족한 후 승인을 결정한다.

1. 혜택을 받는 기업은 규정에 맞는 형식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한다.
2. 세무관청은, 승인 요청을 접수한 날짜에, 청구한 모든 세금의 납부를 증명하거나, 지급기한을 부여하는 납세자명부 증명을 발행한다. 이 절차는 매년 각 도 세무서 관할부서 조사관에 의한 면세 구매 승인에서 요구된다.

제 47 조

부가가치세 면제 구매 시, 수혜자가 판매자 또는 관세청에, 세무서(간접세 및 매출액에 대한 세금 관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이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세금의 납부를 서약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증명서는 다음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1. 수혜자의 정확한 직책
2. 기업의 제조업 등록번호
3. 면세 구매 승인번호
4. 증명서 수신자의 정확한 직책
5. 제 35 조의 내용을 참조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취득한 제품이나 상품의 도착지
6. 구매가격, 증명서가 포함하지 않는 제품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7. 증명서 발급자의 부가가치세 및 사후 재판매 또는 면세를 위해 한정된 목적 이외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에 대한 납부 서약

제 48 조

회계연도 마감 시, 1 월 15 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면제 구매의 수혜자는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로 취득하여 1 월 1 일 0 시 기준으로 보유하는 제품 및 상품 재고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한 상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제품이나 상품의 종류나 가격의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재고의 금액은 전년도 수출되거나 부합하는 목적지에 인도된 상품의 구매가격을 참고하여 총괄적으로 결정한다.

제 49 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구매 승인에 관한 원칙의 위반은 이 조에서 정하는 조건 하에, 제 116 조에서 제 139 조, 제 149 조, 제 150 조의 처벌 이외에 관할 지역 세무서장의 결정에 따른 임시적 또는 영구적 승인 철회를 야기할 수 있다. 탈세행위가 정당하게 입증된 경우, 지역 세무서장은 승인의 철회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

제 2 절 세금의 반환

제 50 조

이 법규 제 34 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 29 조 및 이하의 조건에 따라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전체금액으로 전가될 수 없으며 다음으로 인한 차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1. 상품, 노동, 서비스의 수출 및 제 42 조에 따라 면세 구매가 승인된 제품의 인도
2. 제 30 조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의 법적 전환 규정으로 인해, 과세대상 활동을 중단하는 개인 또는 회사가 마지막으로 제출한 매출액 신고에서 활동의 중단 날짜에 보유한 상품재고에 대한 의무적 신고
3. 자재 및 제품의 취득 시 적용한 부가가치세율과 제품의 양도나 과세대상 활동의 실현 시 적용하는 세율과의 차이

그러나 최소 12 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기록된 차액에 한해서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가능하다. (1998 개정금융법 제 37 조)

제 4 장 신고 및 납부의 방법

제 1 절 총칙

제 76 조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활동을 영위하는 자는 매월 20 일 이전에 본사 또는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수세관에, 전체 과세대상 활동으로 인해 실현한 매출액 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1995 년 개정금융법 제 62 조) (1996 년 개정금융법)

2. 총괄 회계관리부서가 없는 납세자는, 제 1 항에서 정하는 기한과 형식에 따라 관할 수세관에 각 사업단위 별 매출액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신고 제출 기한 마감일이 법적 공휴일인 경우, 제출 기한은 다음 첫 영업일까지 연장한다.

제 77 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납세자는 매 3 개월 마다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1. 관할 세무서장에 명시적 요청을 발송하고
2.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세금의 월 평균 금액이 2,500 DA 미만인 경우

제 78 조

실존신고 제출 시 분기별 신고 요청을 하는 경우, 실존신고 이후 6 개월 간 성립한 세금이 5,000 DA 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승인한다. 6 개월의 기간 이후에,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는 사후에 제 76 조에서 정하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분기별 납부의 경우, 해당 분기의 익월 20 일 이전에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1995 년 개정금융법 제 62 조)

제 79 조

제 76 조에서 언급한 명세는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1. 관할 세무서의 명칭
2. 세금이 성립한 월 또는 분기
3. 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이름과 주소, 회사인 경우 법인명, 본사주소 및 경우에 따라 지점 및 지사의 주소
4. 과세대상 활동이 속한 산업 및 상업분야
5. 해당 월 또는 분기에 과세대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 및 경우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활동을 분리하여 적용세율과 이에 따른 세액
6. 회수 가능한 세액

7. 납부해야 하는 세액 또는 경우에 따라 이월 가능한 금액

또한, 납세자 본인 또는 정식으로 승인 받은 대리인이 증명하고, 날짜를 기록한 후 서명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명세서 상에 총 매출액, 법적으로 공제 가능한 지출액 및 과세 이전 순 매출액을 제시해야 한다. 1 개월 간 매출액에 대한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어떤 활동도 없는 경우,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사항 없음'을 기록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80 조

납세자가 제출한 명세서에 따른 전체 세금은 명세서의 제출 또는 발송 시점에 납부해야 한다.

제 80-1 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증가 규정은 직접세 및 유사세법 제 324 조의 내용을 따른다. (1996 년 개정금융법 제 86 조)

제 81 조

납세자는 지정 수세관에게 내거나 발송한 현금, 수표, 우편송금환 또는 수세관의 계좌로의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액이 10 DA 를 초과하는 경우, 동일한 기한 및 조건에 따라, 지정인에게 제출하는 수표에 지정인의 이름 대신 '알제리 중앙은행'을 기입할 수 있다.

상품의 인도 및 판매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시행 중인 규칙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담보 채무의 형태로 납부할 수 있다.

제 82 조

모든 순회공연단체 및 단독 공연과 특별상연의 경우, 각 회 공연 이후에 지정 수세관에게 해당 공연의 모든 수입을 열거하는 명세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2 절 원천징수

제 83 조

알제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이 영위하는 서비스 제공활동에 따라 성립하는 부가가치세는, 이 활동에 따른 과세대상 금액을 지불하는 개인, 회사, 기관, 단체로부터 국고가 징수하며, 해당자는 본사 또는 거주지 관할 수세관에 지불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하기 조항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995 년 개정금융법 제 62 조)

제 84 조

부가가치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수행하는 모든 개인, 회사, 단체는 세무관청이 제공하는 일련번호를 붙인 부본을 발췌한 영수증을 해당 납세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원천징수를 수행하는 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대금을 지급할 때 부본에 다음을 기입해야 한다.

1. 지급일
2. 원천징수를 부담하는 개인의 이름, 직업, 거주지, 회사인 경우 법인명과 본사주소
3. 지급사유, 총 지급액, 총 과세대상 금액 및 이에 따른 징수액

지급사유를 제외한 모든 기입 사항은 원천징수를 수행한 개인, 회사 또는 단체의 이름 및 주소를 명시하는 영수증에도 포함해야 한다. 영수증은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해야 하며 우편료가 면제된다.

제 85 조

징수 대상이 되는 대금지급을 하는 개인의 거주지 또는 기업의 본사, 사무소 관할의 세무조사관에 발송한 서면요청에 따라 부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부본은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발행한 직원이 서명하거나 직인을 날인한다. 부본은 최종 기입날짜 이후 3 년의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세무서 직원에게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 123 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가한다.

부본 발행지의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나 회사의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신규 관할 지역의 세무조사관에게 부본을 제시하고 새로운 일련번호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제 86 조

세무조사관의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나 본사를 이전하거나 기업의 양도 또는 중단하는 경우 즉시 청구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87 조

세금의 납부 시, 납부하는 자의 이름, 주소, 세금이 징수된 월, 발급된 영수증 번호, 영수증이 발췌된 부본의 번호 및 월간 총 대금지불액, 총 과세대상 금액과 이에 따른 세금 징수액을 기록한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명세서에 해당 세금에 대한 수납확인 도장을 날인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 기업 및 단체는 제 115 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징수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전체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 116 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해진 기한 내에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지 않는 자는 세금 이외에 제 140 조에서 정하는 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가산금은 알제리 중앙 금고부가 예산을 관리하는 공공 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도의 금고부가 예산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한 지불 명령을 전달한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 개월이 지난 후에만 적용 가능하다.
원천징수를 수행하거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대금을 지급하는 개인, 회사 또는 단체는 해당 세금 및 사후 발생하는 가산금에 대해 연대적 책임을 갖는다.

제 88 조
복권 판매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알제리 복권 협회에 의해 판매일 익월 또는 다음 분기 첫 월의 20 일 이전에 제 84 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관할 수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1995 개정금융법 제 62 조)

제 3 절 일괄납부제도

제 89 조
개인적으로 또는 개인회사의 형태로 활동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제 65 조, 제 66 조, 제 74 조 및 제 76 조에서 정하는 의무를 면제하며, 총 연간 매출액이 다음과 같을 때 해당연도에 대해 성립한 일괄납부제도에 따른다.

1. 서비스 제공활동의 경우 50,000 DA 초과 800,000 DA 이하
2. 기타 납세자의 경우 80,000 DA 초과 1,500,000 DA 이하 (1994 년 개정금융법)

제 90 조
일괄납부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매출액이라 함은 납세자가 알제리 국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현한 총 매출액으로 한다.

제 91 조

납세자의 매출액이 상기 언급한 두 범주에 동시에 속하는 경우, 총 연간 매출액이 900,000 DA 를 초과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활동에 대한 연간 매출액이 400,000 DA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일괄납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 92 조

일괄납부가 허용되는 납세자의 세금은 3 개월 마다, 각 분기의 마지막 날 이전에 연간 총 세액의 1/4 씩 납부해야 한다. 각 분기의 마지막 날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납부 기한은 다음 첫 영업일로 연장한다.

제 93 조

일괄납부제도는 의무적으로 1 월 1 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활동의 변경이나 새로운 법률의 도입을 제외하고는 제 89 조에 언급한 기간 동안 수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괄납부에 따른 징수액이 실제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요청하고 세무서가 확인한 후 첫 번째 해의 연말부터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제 94 조

일괄납부제도를 적용하는 납세자는 제 70 조에서 정하는 기한 동안 공급업자의 송장 및 매출액을 파악하기 위해 세무사가 서명한 장부를 보존하고 세무서 또는 기타 관할 기관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매년 3 월 1 일 이전에 관할 세무서에 직접세 및 유사세법 제 11 조에서 제 15 조에서 지정하는 신고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 95 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일괄납부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

1. 다른 과세대상자와 판매 거래를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
2. 수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
3. 탄화수소 관련 규정으로 세금 면제 혜택을 받거나 부가가치세 면세 구매를 승인 받은 기업과 판매 거래를 하는 자
4. 분양업자, 부동산업자 및 공연 및 모든 종류의 오락활동의 기획자

신규 납세자는 활동 시작일 익년의 1 월 1 일 기준으로 최소 6 개월 간 활동을 영위한 경우에 한해 일괄납부를 도입할 수 있다.

상법 제 9 조 및 제 10 조에 부합하는 회계기록을 유지하는 납세자는 실제 매출액에 대한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일괄납부에 따른 과세 기간의 첫 해 2 월 1 일 이전에 선택해야 하며 선택 후 2 년 간 유효하다. 이 기간 동안 취소할 수 없다.

제 96 조

매년 1 월 15 일 이전에 세무관청은 수신확인 등기우편을 통해 일괄납부의 대상자 및 일괄납부 적용기간이 만기된 자에게, 수신 후 20 일 이내에 작성하여 세무조사관에 회신해야 하는 인쇄물을 발송한다. 회신 시, 송장 명세서 또는 공제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취득과 관련한 관세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전 2 년 간 제 95 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실제 매출액에 따른 과세를 적용 받은 납세자 또한 상기 언급한 것과 동일한 의무를 갖는다.

세무관청은 납세자가 인쇄물에 기입한 정보와 기타 모든 요소를 기반으로 과세대상 매출액의 평가를 진행하며, 해당자에게 수신확인 등기우편을 통해 일괄납부의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과 이에 따른 세액을 통지한다.

통지를 수신한 후 20 일 이내에 해당자는 승인의사를 표시하거나 과세대상 매출액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과세관청이 정한 내역으로 최종 통지를 발송한다. 관청이 납세자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는 경우, 이 금액을 일괄납부의 과세표준으로 하며 상기 열거한 조건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관청이 납세자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이 결정을 납세자게 알리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과세표준을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20 일 이내에 각 도의 관할부서 세무조사관에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세무조사관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상소 가능하다.

납세자가 상기 언급한 인쇄물을 통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미 보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세무서에서 일괄납부의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그러나 송장 및 공제대상 상품과 서비스의 취득에 대한 관세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기 언급한 각 도 세무서의 세무조사관에 재검토 요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된 과세표준은 최종적이다.

제 97 조

일괄납부 통지 이전 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조건에 따라 납부한다.

1. 실 매출액에 대한 과세를 적용 받는 납세자는 계속적으로 신고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다.
2. 일괄납부를 통지 받은 납세자의 경우 이전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일괄납부의 과세표준 결정 기준이 되는 납세자의 신고에 부정확성이 발견되거나 위법행위가 입증된 경우 결정된 과세표준은 무효로 하며 새로운 표준을 설정한다. 일괄납부액이 법이 요구하는 정보나 문서의 제출 없이 결정된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과세액은 새로 결정된 표준에 따라 정하며 제 114 조 및 제 116 조에서 정하는 가산금을 추가한다.

납세자가 세무서에 제출한 신고서나 제 95 조에서 언급한 인쇄물 상의 정보를 통한 검사에서 일괄납부의 과세표준과 실제 실현된 매출액이 2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차이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재조정한다.

만기된 기간의 조정에서 송장이나 관세서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증명된 공자가능 세액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 경우 세무서의 경고장을 수령한 후 15 일 이내에 납부하면 별도의 가산금은 없다. 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제 140 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른 가산금을 적용한다.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해당기간 또는 전 기간의 일괄납부액에서 감면하거나, 실 매출액에 대한 과세를 적용 받는 경우 신고액에서 감면한다.

제 98 조

일괄납부 기간으로 확정된 기간 중 사업을 중단하거나 납세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난 지불만기일에서 중단 또는 사망일 까지 발생한 세금과 가산금에 대해 납세자 또는 상속인이 납부 의무를 갖는다.

제 99 조

기업의 피양도자 또는 계승자는 해당기업의 경영 조건이 현저하게 변화하지 않은 경우 요청에 의해 양도자 또는 선임자와 동일한 조건 및 기간으로 일괄납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양도자 또는 계승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소유권 변경 20 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사망에 의한 계승의 경우 이 기한은 6 개월로 연장한다. 요청의 수신 후 20 일 이내에 관청의 회신을 없는 경우, 피양도자나 계승자는 양도자나 선임자에게 고정된 일괄납부의 적용을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 100 조

소유권 변경일 해당 분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전액은 정해진 기한 내에 피양도자나 계승자가 납부해야 하며, 체납할 경우 제 140 조에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 101 조

세무서장이 기업의 경영 조건이 현저하게 변화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양도자나 계승자에 대한 일괄납부 적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이 결정을 통지한다. 이 경우, 피양도자나 계승자는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신고에 따른 과세를 적용 받는다.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 140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한다.

제 4 절 임시선금제도

제 102 조

고정적 사업장을 갖고 최소 6 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납세자는 요청에 따라 임시선금제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매년 2 월 1 일 이전에 요청해야 하며, 사업의 양도나 중단의 경우를 제외하고 1 년 동안 유효하고 명시적 철회요청이 없는 경우 암묵적으로 갱신된다.

제 103 조

임시선금제도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매월 제 76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 별로 전년도 과세대상 소득의 1/12 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2.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송장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세액을 제하고, 신고액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다.
3. 매년 4 월 1 일 이전에,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전년도 매출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4 월 25 일 이전에 임시선금제도에 의해 기 납부한 세금과 신고내역에 따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차액을 납부한다.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기 납부한 세금 미만인 경우, 이 차액은 사후 납부해야 하는 선금으로 이월되거나, 납세자가 과세의무를 상실하는 경우 반환된다.

제 104 조

임시선금제도를 도입한 납세자의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1/3 미만인 경우,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제출한 요청을 통해, 상반기 매출액의 2 배의 금액으로 연간 매출액을 조정할 수 있다.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2/3 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7 월 25 일 이전에 이를 신고하고 상반기 매출액의 2 배의 금액으로 연간 매출액을 조정해야 한다.

제 5 절 수입 시 부가가치세의 징수

제 105 조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함께 징수한다.

제 6 절 수출 시 부가가치세의 징수

제 106 조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함께 징수한다.

제 7 장 분쟁 규정

제 1 절 직권과세의 절차

제 107 조

다음의 경우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직권사정을 통해 결정한다.

1. 검사관이 납세자나 제 3 자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2. 정기 회계문서 또는 신고한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제 66 조와 제 69 조에서 정하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3. 제 76 조 및 제 77 조에서 정하는 매출액 명세서에 대해 세무서가 수신확인 등기우편으로 공식 요청한 후 8 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996 개정금융법 제 87 조)

제 108 조

직권에 의하나 과세는 직권사정에 의해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이에 따른 세금과 제 116 조에서 정하는 가산금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 통지일 이후 6 개월 이내에 각 도의 세무관청의 담당자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접수한 후 4 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이의 제기는 직접세 및 유사세법 제 332 조와 동일한 조건에 따른다. (1996 년 개정금융법 제 88 조)

제 109 조

각 도의 세무서장이 이의 제기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기각한 경우, 직권으로 과세한 세금은 직접세 및 유사세법 제 300 조에서 제 302 조에 정하는 위원회 또는 관할행정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제 142 조의 내용을 전제로, 제 108 조에서 정하는

4 개월의 기한 내에 또는 그 이후에 각 도의 세무서장이 발송한 기각 통지를 수령한 후 4 개월 이내에 수속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 108 조에서 정하는 4 개월의 기한 내에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이 기한 만료 후 4 개월 이내에 행정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1998 년 개정금융법 제 39 조)
상소절차는 분쟁 중인 세금 원금의 납부를 중지하는 효력은 없다. 그러나 가산금의 납부는 최종적인 법적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한다.

제 110 조
매출액 명세서를 제 76 조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는 제 115 조에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 111 조
어떤 것도 직권사정이 이루어지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세무관청의 조서를 통한 확인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제 1 부 신고내용의 확인

제 111-1 조
세무조사관은 신고내용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계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납세자의 구두 설명이 요구되거나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서면을 통한 확인 및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가 구두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요청에 대한 회신이 확인이 필요한 요소의 전체나 일부에 대한 거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세무조사관은 서면으로 30 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세무조사관은 신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사전에 각 수정항목에 대해 명확한 형태로 사유 및 관련 세법 조항을 명시하여 수정 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동시에 해당 납세자가 30 일 이내에 수정 내용을 승인하거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관은 직권과세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정한다.

제 2 절 세무조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추징

제 112 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는 관습법 상 모든 형태의 증거 또는 경시청, 세무, 등기, 관세 관청 및 탈세 예방 기관이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성립할 수 있다. 위반행위는 해당 세금의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의 정식 절차에 따라 추징된다.

제 113 조

1. 세무관청의 직원은 납세자의 회계자료에 대한 조사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과세기초 및 세금의 감독에 필요한 모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회계자료에 대한 조사작업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내용을 감독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장부 및 회계문서에 대한 확인은, 납세자가 서면으로 요청하고 세무기관이 승낙한 경우와 세무기관이 인정한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에서 진행한다.
2. 회계자료의 조사작업은 최소 검사관 이상의 직급을 가진 세무관청의 직원만이 수행할 수 있다.
3. 회계자료의 조사작업은 수신확인 우편을 통해 납세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통보 수신일 이후 최소 10 일의 준비기간을 제공한 후에 시작할 수 있다. 세무조사통지는 첫 방문의 날짜와 시간, 확인 대상 기간, 해당 세금, 참고가능 문서를 표시하고, 납세자에게 조사 기간 중에 본인의 선택에 따른 자문인의

도움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절차가 무효화될 수 있다.

제 74 조의 내용에 따라 사업의 물질적 요소를 확인하거나 회계문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 감독의 경우, 감독 작업 시작 시 세무조사통지를 전달한다.

4. 다음 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는 4 개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절차가 무효화될 수 있다.
   1) 조사 대상 회계연도의 매출액이 1,000,000 DA 를 초과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 기업
   2) 조사 대상 회계연도의 매출액이 2,000,000 DA 를 초과하지 않는 기타 모든 기업

   상기 언급한 기업의 조사대상 회계연도 매출액이 각각 5,000,000 DA, 10,000,000 DA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속하는 경우 조사기간은 6 개월까지 연장한다. 다른 모든 경우에 현장조사 기간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조사기간은 세무조사통지 상의 첫 번째 방문날짜부터 계산한다.

   탈세행위가 정당하게 입증되거나, 조사 기간 중에 납세자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사관의 확인 요청에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상기 언급한 현장조사기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5. 조사 이후에 조사관이 과세표준을 정하는 경우 직접세법 제 191 조에 따른 회계자료의 거부를 제외하고, 세무관청은 과세표준에 정정이 없더라도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정정통지에는 납세자가 세금인상에 대해 논의하고 통지에 회신하는데 본인이 선택한 자문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절차가 무효화될 수 있다. 통지는 수신확인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납세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정정통지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재구성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승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납세자는 통지를 수령한 후 40 일 이내에 승인을 표시하거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암묵적 승인으로 간주한다. 회신 기한 만료 이전에, 회신 기한 만료 이전에 납세자가 요청할 경우 조사관은 통지의 내용에 대해 모든 유용한 구두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회신 이후에도 납세자의 청취가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납세자가

부가적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조사관이 납세자의 의견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상세히 설명된 서신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6. 납세자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승인에 따라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며, 납세자가 탈세적 수단을 사용하였거나 조사 기간 중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관청이 이를 정정하나 납세자가 분쟁 수단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특정 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납세자가 탈세적 수단을 사용하였거나 조사 기간 중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관청은 동일 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8. 회계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서명해야 하는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하며 납세자가 서명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한다.

제 3 절 처벌

A. 세무적 처벌

제 114 조

아래 제 115 조 및 제 116 조에서 정하는 내용을 전제로, 부가가치세의 적용과 관련한 모든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00 DA 에서 2,500 DA 의 세무적 벌금을 부과한다.

탈세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 이 벌금은 1,000 DA 에서 5,000 DA 로 인상한다.

제 60 조에서 정하는 신분확인표시의 날인이 없는 경우 1,000 DA 로 고정된 벌금을 부과하며 이 법규가 정하는 기타 처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61 조에서 정하는 의무에 대한 위반은 매출액에 대한 세금 징수기관에 의해 1,000 DA 에서 5,000 DA 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15 조

제 76 조에서 정하는 매출액 명세서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1. « 신고사항 없음 »을 기입하여 제출한 경우
   1) 해당월 25 일에서 말일 사이에 제출 시 100 DA 의 벌금을 부과한다.
   2) 해당 월의 말일 이후에 제출 시 500 DA 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제출한 명세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1) 세금 납부 기한으로 정한 해당월의 25 일에서 말일 사이에 제출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15%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이는 100DA 미만일 수 없다.
   2) 세금 납부 기한으로 정한 해당월의 말일 이후에 제출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25%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이는 500 DA 미만일 수 없다.

제 116 조

1. 세무조사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한 연간 매출액이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공제가 적용된 경우 회피한 세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누적된 회피 세액이 50,000DA 이하인 경우 10%
   2) 누적된 회피 세액이 200,000DA 이하인 경우 15%
   3) 누적된 회피 세액이 200,000DA 를 초과하는 경우 25%
2. 탈세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 총 세액에 대해 200%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탈세액이 전체 세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세무관청은 제 117 조의 내용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B. 형사 처벌

제 117 조

탈세적 수단을 사용하여 과세기초, 세금의 지급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전체나 일부를 삭감하거나 삭감하려고 한 자는 5,000 DA 에서 20,000 DA 과 형사적 벌금 및

1 년에서 5 년의 징역 또는 위 두 처벌 중 하나에 처한다. 회피한 세금의 액수가 10,000,000 DA 를 초과하여 국고에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한 자는 1989 년 7 월 5 일의 법률 제 89-12 호의 제 69 조, 제 71 조, 제 73 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부과하며 형법 제 418 조에서 정하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992 년 금융법 보완안에 포함된 1992 년 10 월 11 일의 법령 제 92-04 호)

제 118 조

제 117 조의 적용에 있어서 탈세적 수단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1. 납세 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의 금액 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수입을 축소하거나, 축소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특히 송장 없는 판매
2. 부가가치세의 면제, 감면, 반환 또는 특정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세무적 특혜를 얻기 위하여 거짓 또는 부정확한 문서를 제출하는 행위
3. 상법 제 9 조 및 제 10 조에서 정하는 장부 및 재고장부 또는 기타 문서에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거나 허구의 사실을 기록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경우. 이 항의 내용은 기록을 남긴 해당 회계연도의 부정확성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4. 동산 소득 또는 매출액의 신고 상의 고의적 누락이나 불충분함
5. 지불불능을 조작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납세 의무가 있는 세금의 징수를 방해하는 행위
6. 제출한 신고에 따라 요구되는 세금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납부를 축소하거나 지연하기 위한 의도를 갖는 모든 행위, 수단, 행동

제 119 조

제 117 조에서 정하는 위반행위는 해당 세무관청의 관할 법원에의 제소에 따라, 법원의 제지 판결로 추징되며, 관할법원은 관청의 선택에 따라 과세지역, 차압지역, 해당기업의 본사 소재지의 법원 중 하나로 한다.

각 도의 세무서장은 추징 대상이 되는 세금 및 벌금의 완납 후 국세청장의 동의에 따라 소송을 철회할 수 있다.
소송의 철회는 형사소송법 제 6 조의 내용에 부합하는 공적 행위를 중단한다. (1998 년 개정금융법 제 40 조)

제 120 조
평가에 희한 과세 시, 자격 있는 세무관청 직원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공공 업무 수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경우 형법에 포함된 1966 년 7 월 8 일의 명령에서 정하는 처벌을 부과한다.

제 121 조
세금 납부 거부행동을 조직하거나 조직하려고 하는 자는 국가 경제의 운용을 방해한 죄로 처벌에 처한다. 대중이 세금의 납부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도록 유도한 자는 제 117 조에서 언급한 처벌에 처한다

제 122 조
어떤 방법을 이용하드니 세법의 위반을 확인할 능력이 있는 직원의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자는 1,000 DA 에서 10,000 DA 의 세무적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벌금은 시행 중인 기타 처벌과는 독립적이다.
재범에 대해서 법원은 6 일에서 6 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과세기초 성립에 대한 집단적 반발이 있을 경우, 형법에 포함된 1966 년 7 월 8 일의 명령 제 66-156 호에서 정하는 처벌을 적용한다.

제 123 조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보존기간 만료 이전에 문서를 파기한 개인 또는 회사는 1,000 DA 에서 10,000 DA 의 세무적 벌금에 처한다.
거부를 확인하는 진술조서의 날짜로부터 최소 일 50 DA 의 가산금을 적용하며, 직원이 해당자의 장부에 세무관청이 상기 언급한 자료를 취득하려 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날짜에 거부가 종료한 것을 간주한다.

제 124 조

세금의 성립, 징수, 감독 및 분쟁과 관련한 자가 사업기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법에 포함된 1966 년 6 월 8 일의 명령 제 66-156 호에 따라 처벌한다. 사업기밀유지에 관한 규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세무관청 및 그 직원은, 납세자가 실현한 매출액에 대한 사정에 관한 소송에서 해당 납세자가 실현한 소득에 대한 실질적 납세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125 조

양도된 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에 부합하는 정식 송장이 발행되지 않은 모든 구매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탈세 행위로 간주한다. 이 경우, 구매자 단독으로 또는 판매자와 연대적으로 해당 구매에 대한 세금 및 제 116 조에서 정하는 벌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 조의 내용은 개인이 실현한 구매나 상인이 개인적 필요에 의해 실현한 구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126 조

하기 128 조의 내용을 전제로, 위반행위의 공범자는 직접 위반행위를 한 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제 127 조

형법에 포함된 1966 년 6 월 8 일의 명령 제 66-156 호에서 정하는 공범의 정의 및 위법행위는, 상기 언급한 위반행위에 대한 공범에게 적용한다.

제 128 조

모든 직원, 전문가, 또는 좀 더 일반적으로 여러 회사의 회계문서를 작성하거나 작성을 돕는 회사나 개인이 부정확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적 벌금을 부과한다.

1. 첫 번째 위법행위 1,000 DA
2. 두 번째 위법행위 2,000 DA
3. 세 번째 위법행위 3,000 DA.

이후에 발견된 위법행위의 벌금은 건당 1,000 DA 가 추가된 금액으로 하며, 이 위법행위가 단수 또는 복수의 납세자와 관련이 있는가, 단계적으로 또는 동시에 이루어졌는가 여부는 관계 없다.

또한, 과세표준이나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결정을 위해 작성한 대차대조표, 재고장부, 모든 종류의 장부 및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를 도운 자는 이 법규의 제 117 조에서 정하는 처벌에 처한다.

2 회 이상, 또는 하나 또는 복수의 판결에서 복수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상기 내용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는 경영인 또는 고용인의 명목으로 사업중개인, 세무사, 회계사 등의 직종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으며 폐업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제 129 조

고객의 대차대조표, 재고장부 및 징세기초 결정에 사용되는 모든 문서 및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작성을 도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업중개인, 세무사,

회계사 등의 직종 수행 금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000 DA 에서 10,000 DA 의 형사적 벌금을 부과한다.

제 130 조

기타 원칙이 정하는 특수 처벌을 침해하지 않고, 하기 131 조에 정의한 재범에게 초범에게 부과하는 세무적, 형사적 벌금을 2 배로 부과할 수 있다. 세금의 회피에 대한 세무적 처벌은 항상 회피한 세금의 3 배의 금액으로 하며 5,000 DA 미만일 수 없다.
제 114 조 및 제 116 조에서 언급한 위법행위의 재범은 추가로 6 일에서 6 개월의 징역에 처하며 초범에게 부과된 징역형의 2 배에 처한다.
이 법규의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판결의 공개 및 공표는 제 134 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제 131 조

재범이라 함은, 이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을 받은 개인 또는 회사가 처벌 판결이 있은 후 5 년 이내에 동일한 처벌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제 132 조

형법에 포함된 1966 년 6 월 8 일의 명령 제 66-156 호 제 53 조의 내용은 세무적 성격의 처벌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제 130 조 및 제 134 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제외한 형사적 처벌에만 적용한다.

제 133 조

세무적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누적된다.

제 134 조

형사적 처벌을 유발하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은 판결의 전문 또는 발췌를 지정된 신문이나 지정 장소에 공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처벌 받는 자가 부담한다.

제 135 조

동일 위법행위에 대하 처벌을 받는 개인 또는 회사는 금전적 처벌의 지불에 대해 연대적 책임을 갖는다.

제 136 조

이 법규의 내용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모든 판결 및 명령은, 탈세 또는 회피한 세금의 납부를 포함한다.

제 137 조

이 법규가 정하는 금전적 처벌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포함된 1966 년 6 월 8 일의 신체적 구속과 관련한 명령 제 66-155 호 제 597 조 및 그 이하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처벌 명령 판결에서 벌금 및 세무적 채무의 총액에 해당하는 신체적 구속 기간을 정한다.

제 138 조

회사 또는 법인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회사의 경영인이나 법적 대표자에게 징역형 및 부속처벌을 부과한다. 형사적 벌금은 경영인이나 법적 대표자와 법인에 대해 동시에 부과하며, 세무적 벌금도 동일하다.

제 139 조

제 117 조, 제 128 조의 적용으로 발생한 벌금을 제외하고, 이 법규에 따라 발생한 세무적 벌금은 세무관청의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면 또는 경감은, 하기 제 141 조에서 정하는 세금의 납부 지연에 따를 처벌에 대한 사면 또는 경감과 같은 조건에 따른다.

제 4 절 징수 분쟁

I. 내수 관련 규정

제 140 조

납세자의 모든 법적 의무의 완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 지연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유발한다.

1.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10%의 세무적 벌금
2. 납부기한 만료 후 2 개월 째 1 일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월별 3%의 가산금. 그러나 상기 언급한 세무적 벌금과 합산하여 최대 25%를 초과할 수 없다.
3. 납부 지연에 따른 10% 벌금이 신고 제출 지연에 따른 벌금과 합산되는 경우, 신고의 제출과 세금의 납부가 납부기한 해당월 말일까지 완료되는 조건으로, 그 금액을 해당 세액의 15%로 한다. (1996 년 개정금융법 제 91 조)

제 141 조

세무적 벌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예외적으로, 다음 조건에 따라 세무관청의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벌금의 사면 또는 경감은, 특히 국고의 우선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의 추징에서 신의 성실한 납세자에게 부여한다. 신의 성실의 판단은 세무적 의무 완수의 기한 엄수와, 세무적 채무를 상환하려는 납세자의 노력에 달려있다. 세금을 납부한 후 납세자는 각 도의 세무서에 처벌의 사면 또는 경감을 요청할 수 있다. (1993 년 개정금융법)

이 요청에 대한 판결 권한은 다음에 귀속된다.

1. 벌금이나 연체료의 총액이 250,000 DA 를 초과하는 경우, 지역 단위의 위원회의 판결과 관할 지역의 지방 세무서장
2. 벌금이나 연체료의 총액이 250,000 DA 이하인 경우, 도 단위의 위원회의 판결과, 각 도 세무관청의 책임자

상기 언급한 위원회의 설립, 구성 및 기능은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른다. 도 단위 세무서장의 결정은 지역 단위 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제 142 조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추징은 징수기관에 따라 기타세금 또는 관세와 같이 수행한다. 이에 대한 탄원 및 소송은 관할 법원에서 심리하고 판결한다.

기타세금 관련 기관에서 수행하는 세금의 징수는 이 법규 제 108 조 및 제 109 조의 내용과 민사 및 형사소송법에 포함된 1966 년 6 월 8 일의 명령 제 66-154 호와 제 66-155 호에 부합하도록 진행한다.

제 143 조

추징에 따른 모든 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한다.

제 144 조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있어서, 국고는 소재지에 관계 없이 납세자가 소유한 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해 직접세 및 유사세법 제 380 조에서 정의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우선권을 갖는다.

관례적 저당이 부재하는 경우, 민법 제 683 조에 따라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요소를 포함한 상업시설의 운영에 이용되는 모든 요소에 대해 이 조가 규정하는 우선권을 행사한다.

이 우선권은 세금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4 년까지의 기한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보완적 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기존의 신고를 부정하는 납세자의 신고된 매출과 관련한 4 년의 기한은 이 명세서의 실제 제출일부터 계산한다. 위법행위 및 미신고 매출액에 대한 세금에 대한 기한은 진술조서의 전달 또는 수동적 납세자명부 성립일로부터 계산한다.

파산 또는 법정 청산의 경우, 원금과 선고판결일 이전 6 개월에 대한 연체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우선권을 행사하고 모든 벌금은 포기한다.

제 145 조

직접세 및 유사세법 제 383 조, 제 385 조, 제 387 조, 제 401 조의 내용은 이 법규의 제 144 조에서 규정한 우선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납세자 재산에 대한 채무자나 수탁자는 직접세 및 매출액에 대한 세금의 징수를 담당하는 제 3 의 권리 보유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소유한 부분에 대한 집행을 허용해야 한다.

이 조의 내용은 수입세의 징수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수입세의 경우 제 149 조 및 제 151 조의 내용을 적용한다.

제 146 조

기타세금 관련기관이 징수하는 모든 종류의 세금 및 세무적 벌금에 대해 국고는 납세자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법적 저당권이 있으며 저당등기의 의무가 없다.
세무기관이 징수를 담당하는 수세관에 세금 납부 및 명세서 제출 요청을 발송한 날짜에 자동적으로 저당권이 발생한다.
저당권 보유자는 채무자가 판제한 납세자목록의 발췌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채무금액에 대한 등기를 진행할 수 없다.

제 147 조
기타세금 관련기관이 징수하는 모든 종류의 세금 및 세무적 벌금 중 유한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탈세적 수단 또는 반복적인 법률위반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직접세 및 유사세법 제 14 조 2 항에서 정의한 대주주 겸 경영자 또는 소수주주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벌금에 대해 회사와 연대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징수를 담당한 직원은 경영자를 본사 소재지 관할법정에 소환하여 약식판결을 진행한다.
법원장의 판결에 대해 경영자의 상소하더라도, 경영자의 이익에 반하여 취한 보존의 수단을 방해할 수 없다.

제 148 조
직접세 및 유사세법 제 346 조 1 항의 내용을 징수가 불가능해진 부가가치세 및 관련 세무적 벌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II.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규정

제 149 조

수입이나 수출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위법행위는 관습법 상 모든 형태의 증거 또는 경시청, 세무, 등기, 관세 관청 및 탈세 예방 기관이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성립할 수 있다.

제 150 조

수입이나 수출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벌하고, 추징되며, 권한이 있는 법원에서 소송이 성립하고 판결된다.

제 151 조

상품의 수출 시, 담보의 제공을 면제받거나, 실제 실현된 수출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세금의 감면을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거나 탈세 수단을 이용한 경우, 부당하게 실현된 감면액의 3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부당한 감면을 취소한다.

제 152 조

우선권 및 저당권에 관한 관세법의 내용은 이 법규의 제 151 조 및 제 152 조에서 언급한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제 8 장 시효

제 1 절 세무관청의 행위

제 153 조

다음과 관련한 세무관청의 행위에 대한 시효는 4 년으로 정한다.

1. 부가가치세의 성립 및 징수
2. 부가가치세를 관리하는 법률 및 규칙에 대한 위반행위의 제재

그러나 위반자가 구류 또는 소환 상태에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기한은 진술조서의 작성완료 후 1 개월 이내로 한다.
세무관청이 납세자의 탈세 행위를 입증하고 납세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상기 언급한 시효를 2 년 연장한다.

제 154 조
역년으로 계산하는 시효는 과세대상 활동을 실현한 해의 1 월 1 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세금의 삭감을 목적으로 한 행위 또는 기타 모든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시효는 세무관청이 납부세액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확인작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제 155 조
다음의 경우 시효가 중지된다.

1. 법적으로 전달한 요청
2. 선금의 지불
3. 각 세무관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진술조서
4. 처벌 감면 요청 제출
5. 이 법규의 제 113 조 2 항에서 정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

징수에 대한 통지에 따라 세무관청에 대한 시효는 중지되고 관습법적 시효가 대신 성립한다.

세무관청에 대한 시효의 중지는 등기우편 또는 기타 집행력 있는 수단을 통해 관청이 보유한 납세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납세자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서신이 전달된 날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 156 조

명령이나 판결에 따른 처벌은 최종적 판결이나 처벌이 내려진 날짜로부터 4 년간의 시효를 가지며, 형사 법원이 선고한 처벌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 내용에 대한 권한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시효가 시작된다.

제 2 절 세금의 반환에 관한 행위

제 157 조

세무관청의 오류로 부당하게 또는 비정상적으로 징수된 세금의 반환은 납부일로부터 4 년의 시효를 갖는다.

제 158 조

납부 이후의 사건에 의해 세금이 반환 가능해지는 경우, 제 157 조에서 정하는 시효의 개시일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짜로 한다.

제 159 조

반환요청은 해당 관청이 고유한 양식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을 내린다.

제 160 조

반환권리가 발생한 후 법적으로 전달된 요청에 의해 시효는 중지된다.

납세자가 관할 도 세무서에 수신확인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요청에 의해서도 시효가 중지될 수 있다.

제 9 장 부가가치세 수입의 분배

제 161 조

부가가치세 수입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1. 정부예산에 85%
2. 지방단체 공동기금에 9%
3. 각 시 정부에 6%

지방단체 공동기금에 분배된 수입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원칙 및 기준에 따라 각 지방단체 간 분배한다.

제 2 편 은행 및 보험회사의 활동에 대한 과세

제 162 조

삭제 (1995 년 개정금융법 제 50 조)

제 163 조

삭제 (1995 년 개정금융법 제 50 조)

제 164 조

삭제 (1995 년 개정금융법 제 50 조)

제 165 조

삭제 (1995 년 개정금융법 제 50 조)

제 166 조

삭제 (1995 년 개정금융법 제 50 조)

제 167 조

삭제 (1995 년 개정금융법 제 50 조)

제 168 조

삭제 (1995 년 개정금융법 제 50 조)

제 169 조

삭제 (1995 년 개정금융법 제 50 조)

제 170 조

삭제 (1995 년 개정금융법 제 50 조)

제 171 조

삭제 (1995 년 개정금융법 제 50 조)

제 172 조

삭제 (1995 년 개정금융법 제 50 조)

제 173 조

삭제 (1995 년 개정금융법 제 50 조)

제 174 조

삭제 (1995 년 개정금융법 제 50 조)

제 175 조

삭제 (1995 년 개정금융법 제 50 조)